

국내 인증제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남지영** · 이재학***

국내 인증제도는 크게 의무인증제도와 임의인증제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무인증제도는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인증제도로 KC 인증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임의인증제도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법정임의인증제도와 법적 근거 없는 민간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임의인증제도는 KS 인증을 포함하여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특정정책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증이며, 민간(단체표준)인증은 민간기관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시행되는 인증이다. 법정인증 외에도 민간인증이 너무 많아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즉 소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증제도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인증제도상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KS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과 함께 민간(단체표준)인증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주요어: 의무인증, 임의인증, KS인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민간(단체표준)인증

1. 서론

인증(certification)은 제품이나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한 제조자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또는 지정) 받은 제 3자가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인증은 사적 당사자의 국내적, 국제적 상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국내외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인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국가의 책무 중 하

나인 건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 내·외적인 상거래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인증은 그 분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증대상을 기준으로 제품인증, 시스템인증, 기술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 인증은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주로 제품의 안전, 품질, 성능 등에 대해 표준(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는 인증을 말하며 KS 인증이 해당된다. 시스템 인증은 조직이 관련 인증 표준 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인증을 말하며 품질경영체제인증(ISO 9001) 등

* 본 연구는 2017년도 표준학회 표준학술논문공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jynam@kpu.ac.kr), 주저자

*** 한국산업기술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jhlee@kpu.ac.kr), 교신저자

이 해당된다. 기술 인증은 시스템이 아닌 제품혁신이나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에 대한 인증을 말하며 전력신기술지정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국내 인증제도는 크게 의무인증제도와 임의인증제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무인증제도는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인증제도로 KC마크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임의인증제도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법정임의인증제도와 법적 근거 없는 민간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임의인증제도는 KS 인증을 포함하여 에너지 절약, 신기술인증, 환경마크 등 특정정책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증이며, 민간인증은 Q마크, 공기청정마크 등 민간기관이 자체수익사업으로 시행되는 인증이다.

그간의 KS 인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KS 인증 브랜드 파워 제고에 대한 연구(강병구, 2011), KS 인증제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남지영, 이재학, 2017), KS 인증제도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유수현, 성효원, 주영란, 허경욱, 2018) 등이 있으며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연구(남지영, 이재형, 이재학, 2017)에서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지연 등(2018)은 공산품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평가 및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연구하였다.

국내시장에서 KS 인증과 함께 소비자들이 인지해야 하는 인증 마크는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다양한 인증마크 속에서 경쟁력을 떠나 국내 인증시장이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소비자들의 인증에 대한 인식 및 신뢰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재학(2011)은 국가 간 시장 및 기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임의인증 통폐합, 의무인증과 임의인증 또는 임의인증 제도 간 중복시험의 상호인정 추진 등 인증 관련 규정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KS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과 함께 민간(단체표준)인증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KS 인증

KS 인증제도의 개정은 인증 관련 당사자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KS 인증제도 개정에 대한 사회환경적 영향의 주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KS 인증의 신뢰성

개정된 KS 인증제도에 따르면 최초인증 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모두 시행하나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는 공장심사만 하고 과거에 실시하던 제품심사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제품심사 폐지는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물론 이 같은 문제를 대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하는 시판품조사가 있으며 시판품조사 횟수와 양을 늘린다고 하나 결국 KS 인증제품의 신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이다. 시판품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신뢰성 저하에 대한 염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인증기관의 경쟁 시스템 속에서 인증기관의 인증 신청 기업 대상 지나친 영업경쟁은 최근 ISO 인증에서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KS 인증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인증기관 간의 경쟁체제 속에서는 KS 인증기관이 인증신청 기업체에 인증 불합격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대부분 합격하는 구조가 되어 기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제품 생산을 촉진시킬 수 없어 인증의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증기관마다 상이한 심사기준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정부의 지도 등으로 표준화 된 하나의 심사기준을 여러 인증기관에 적용한다 해도 1개의 인증심사 기준별로 복수의 인증기관을 운영할 경우 추후 인증심사 기준이 상이해 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결국 제품과 공장시스템 심사의 신뢰성 저하가 예상된다. 이미 국내에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ISO인증 등을 통해 인증기관 복수화 즉 인증기관의 경쟁체제의 폐단을 경험한 바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소비자 측면

인증 기업 측면에서는 KS 인증획득 비용이 감소하고 제품심사에 따르는 심사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반대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소비자불만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의 KS 인증기관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인증기관에 대한 선호도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마크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인증마크 인식여부에 대한 조사(강병구 등, 2010)에 따르면 소비자의 12.6%는 전혀 확인하지 않으며 가끔 확인하는 경우가 75.2%였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인증마크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확인하는 소비자가 인증기관을 구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KS 인증은 국가가 오래전부터 운영해 온 인증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전폭적인 신뢰를 해 온 것이기 때문에 KS 인증의 경우 더욱 인증기관이 어디인가를 확인하지 않을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경우 특정 인증기관의 KS 인증에 대한 평가 또는 구매력을 통한 의사전달을 하지 못하므로 인증 시장의 경쟁체제에서 소비자가 완전히 무시된다. 추후 가능성은 낮으나 KS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결함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지금까지의 KS 인증에 대한 국민 또는 소비자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인증 기업 측면

복수화된 여러 KS 인증기관은 보다 많은 기업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증기업 대상 서비스 측면에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기업만족도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KS 인증심사 등의 소요시간,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신기업과 가장 부합된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장심사에 소요되는 인증비용은 대체로 기본 수수료, 심사수당, 출장, 제품시험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ISO 인증의 심사 관련 비용보다 대폭 저렴하며, 현재 공장심사 관련 원가감안 기업 지불비용을 낮출 여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최초인증 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시행하나 정기심사에서 공장심사만 하게 되므로 폐지된 제품심사 관련 인증비용과 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제품심사의 폐지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완전 폐지가 아니고 KS 인증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품심사를 별도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제품심사 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인성적서 또는 다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받은 시험증명서류 등을 정기검사에서 확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사실상 기업의 절대적 비용 인하라고 보기 힘들다. KS 인증제도 개정 이전에도 K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제품심사 결과(시험성적서)를 KS가 아

닌 다른 인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비용인하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은 복수의 인증기관 중에서 약간 수준의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인증기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서류준비나 절차상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전에도 KS 인증심사를 위한 비용이 국내 ISO인증보다 절대적으로 저렴하였고 실질적으로 KS 인증기관이 많아져도 기업의 인증심사 비용이 대폭 낮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KS 인증기관의 복수화로 기업의 인증관련 비용이 대폭인하 되었다면 이는 KS 인증기관의 적자를 의미하고 이는 부실인증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인증기업은 인증의 합격률이 높은 인증기관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인증을 받는 과정이 비교적 쉬워질 가능성이 클 뿐 비용자체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현장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오히려 인증이 쉬운 기관 선택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

4. 인증기관/인증심사원 측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호에서는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KS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KS 인증기관의 KS 인증과 관련한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금지하고 있다. KS 인증기관이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기술지도를 하면 인증의 합격률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KS 인증기관 복수화의 경우 인증기관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지정심사기관의 경우 이러한 규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많다. 만약 인증기관으로서 KS 인증과 관련된 기술지도 업무를 한다면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품심사를 인증기관(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할지라도)에서 수행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5. 사회 전반

KS 인증제도의 개선은 인증기관 운영의 변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품질개선을 하거나 국가표준기술원 중심의 KS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복수의 인증기관이 KS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도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공조없이 KS 인증에 대한 시장경쟁력이 제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KS 인증을 복수의 인증기관이 자유롭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경쟁체제의 도입은 인증기관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기 보다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기업의 요구사항만을 적극 수용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인증관련 기관들이 국내 ISO9001 시스템인증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저하 즉 ISO인증 관련 인증기관들의 과당경쟁에 의한 ISO인증의 무분별한 남발이라는 작금의 현실을 통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만약 KS 인증 관련기관들이 시스템 인증기관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KS 인증제도는 시장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인증기관 경쟁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의 일본 인증제도 운영 결과 불합격이 없는 인증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S 인증기관들의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심사비용 인하 보다는 KS 인증에 대한 전반적 질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6. 정부(국가기술표준원 등) 측면

KS 인증기관을 하나의 인증기관(표준협회)에서 다수 인증기관으로 확대하는 KS 인증 경쟁체제는 자율경쟁의 취지에서 장점도 있지만, 정부의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새로이 필요하다. 즉 KS 인증 개정으로 수반되는 다수의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인증 관련 교육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에 의해 표준과 인증산업이 본연의 목적을 잃고 단지 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부의 종합 컨트롤 타워 기능 및 관리 감독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편 산업부내에 존재하는 유사 인증제도를 KS 인증 중심으로 통합하는 통합형 인증 체계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인증기관은 많아지는 의견상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인증 마크만의 통합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허경옥, 이재학, 전병호, 2015).

III.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1. 심사위원의 공정성 강화

심사위원 풀(Pool)을 확대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에 대한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하며 심사위원 구성시 담당자의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하되 일부위원에게 심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들의 업무 기피·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즉 심사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 배제 규정

과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부과 및 위반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심사위원 평가·관리 강화

심사위원 관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의 경력 및 참여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의 심사 불참, 심사준비 미흡 등 성실도를 A~C 등급으로 분류하여 C등급을 3번 이상 받은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심사위원의 부정행위시 제재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받거나 금품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기술 심사위원에 대한 제재를 하며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기술 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하고,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5년간 해당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해야 한다.

3.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기준의 합리성 강화

심사기준의 세분화 및 가중치 부여를 통해 신기술 지정 심사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신기술로 지정하는 등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신기술 적용현장의 관리·감독 강화

신기술 적용 시 지정 범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공정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될 때 책임자의 관리

및 감독을 의무화해야 한다.

5. 현장적용기준 마련

발주기관에서 설계시 일률적인 현장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현장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적용시 적용타당성 검토를 위한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신기술 제공 거부시 신기술 개발자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의 개선안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둘째, 발주청은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현장여건에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여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 변경한 경우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신기술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6. 기술사용료 기준 마련 및 상충되는 기준 조정

신기술 특성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이 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신기술 기술사용료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7. 활용실적 관리 강화

연장심사 이후 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기술 개발자가 활용실적을 허위신고 했을 경우 제재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신기술의 지정을 위

해 제출한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적발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적발시 당해년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등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강한 규정이 필요하다.

8. 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 강화

2015년 8월 25일 심의·의결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따르면 보건신기술 인증표시는 인증기간이나 연장 받은 기간에 생산한 제품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신기술 인증표시를 제거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정권고의 수용여부와 수용하지 않은 이유 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처럼 신기술 시행부서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를 통해 신기술 적용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경과 년도 별 추적관리 실시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발주처의 사후점검 결과 성능저하 및 기술적 하자 발견시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이재학, 허경옥, 정주연, 이재형, 김예은, 2015).

IV. 민간(단체표준) 인증

1. 단체표준 인증 관리의 중요성 인식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증에 대한 신뢰이며 인증기관이나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모두가 이를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단체표준은 민간표준의 일부라고 판단되어지나 단체표준인증은 민간영역이 아닌 공공적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 제도가 잘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표준의 인증은 국가표준(KS), KC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당해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없을 때, 또는 업계의 기술발전이 빨라서 KS나 KC가 미처 기술발전에 따라가지 못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못할 때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정부 조달기관에서 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조합, 협회 등에게 표준 및 단체표준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단체표준의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조달청과 단체표준 관련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단체표준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2. 단체표준 인증기관의 인정제도

1) 단체표준인증 기관의 인정업무 담당 주체

단체표준 인증기관의 인정을 담당하는 주체는 단체표준의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이 담당하는 방안, 단체표준우수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는 방안, 그리고 한국인증기구(KAS)

가 담당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각 방안별 장점과 단점이 있겠으나 단체표준인증의 공공성과 대내·외적 신뢰성 확보 문제, 관리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통합인정 기구인 KAS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전문화되어있는 통합인정기구만이 국제적 적합성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으며 MRA/MLA(국제적 상호인정체계)의 주체로서 인증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단체표준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단체표준 인증의 신뢰성은 기본적으로 인증단체가 ISO 17021(경영시스템) 및 ISO/IEC 17065(제품) 등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국제표준의 요구사항 및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 요령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갖추는 데서 출발한다. 또한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인증절차에 대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매뉴얼)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단체표준인증기관은 최소한의 필요 요건인 경영시스템과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격 있는 심사원을 보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정기관으로부터 KS 및 ISO 인증기관 및 KOLAS(KAS)에 준하는 정도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인정심사 및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3) 인증의 중복평가

단체표준 인증과 타 인증(예:KS, KC, ISO 9000 또는 14000, KOLAS 공인시험, 타 법정인증 등)과의 중복평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복평가는 중복시험과 중복 심사문제로 나눌 수 있으며, 중복평가 문제는 많은 해당기업이 비용과 시

간 손실 측면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분야이다. 국제적으로도 중복시험 문제는 무역장벽으로 또한 무역 원활화(Trade facilitation)의 큰 장애 요소로 간주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 세계무역기구(WTO)는 물론 OECD 등에서도 중복시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를 주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법이나 대안 없이는 기업의 경쟁력향상은 물론 단체표준(인증)제도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1) 인증을 위한 중복시험

인증하기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외관치수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한 시험은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다만, 관련 인증제품에 대하여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 성적서를 받거나 또는 KS, KC 인증과 관련하여 제품에 대한 시험을 마쳤는데 이와 유사한 단체표준 인증을 위하여 다시 시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인증을 받는 기업으로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된다. 따라서 유사한 국가표준, KC인증을 위한 시험 항목 또는 KOLAS 시험성적서상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예: 6개월 이내의 시험 결과 등)에서는 중복시험을 면제해 주어 단체표준인증 신청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2) 인증을 위한 중복심사

중복 시험과 아주 유사한 사례로서 중복심사를 들 수 있다. 중복심사는 단체표준 인증신청기업이 갖추어야 할 내부문서에 대한 시스템 심사에서 유사한 국가표준, KC인증 또는 ISO 9000, ISO 14000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단체표준 인증 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경우이다.

단체표준 인증에서 특별히 이들과 다른 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연히 이들 기업에 대한 중복심사는 배제되어야 하고 유사항목에 대한 심사도 배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인증신청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감독관청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신명재, 이재학, 허경욱, 2013).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KS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과 함께 민간(단체표준)인증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궁극적으로 관련 경제주체들의 협조 및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리고 소비자 피해가 없는 인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제조사들도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 협회, 제조사, 소비자가 다 같이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진행된다면 인증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구, 전병호(2010). KS 인증 브랜드 파워 제고 방안. 한국표준협회 보고서.
- 강병구(2011).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KS인증 브랜드 제고에 대한 연구, 표준과 표준화 연구, 1(2),

- 43-62.
- 남지영, 이재형, 이재학(2017).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연구, 표준과 표준화 연구, 7(1), 37-43.
- 남지영, 이재학(2017). KS 인증제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표준과 표준화 연구, 7(2), 1-12.
- 신명재, 이재학, 허경옥(2013). 단체표준 운영제도 개선 방안 연구. 표준학회 보고서.
- 유수현, 성효원, 주영란, 허경옥(2018). KS 인증제도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표준과 표준화 연구, 8(1), 49-64.
- 이재학(2011).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표준과 표준화 연구, 1(2), 63-69.
- 이재학, 허경옥, 정주연, 이재형, 김예은(2015).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현황조사. 표준학회 보고서.
- 최지연, 이상봉, 정길호, 강미영(2018). 공산품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 평가 및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 표준과 표준화 연구, 8(1), 79-101.
- 허경옥, 이재학, 전병호(2015). KS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신뢰성 확보 방안. 한국표준협회 보고서.

논문접수일 : 2018. 05. 14

1차수정본접수일 : 2018. 06. 18

게재확정일 : 2018. 07. 05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Nam, Ji Young* · Lee, Jaihak**

Abstract

The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can be roughly divided into mandatory certification and optional certification. First, the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is a forced certifica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state, and KC certification is representative. Secondly, the optional arbitrary certification system can be divided into optional certification specified by law, which is enforced by law, and private certification without legal basis. The statutory voluntary certification system is a cer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specific policy objectives, such as KS (Korean Standard),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and NEP (New Excellent Product) certifications and the collective standard certification is a certification that is carried out by a private institution as its own profitable business. In addition to statutory certifications, there are too many private certifications and thus, consumers' interest in certification is diminishing. In other words, consumers are confused by complex and diverse certification schemes, and various problems in the certification system are being raised. This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 of the domestic certification system, such as KS, NET and NEP certifications and the collective standard certification.

※ Key Words: mandatory certification, optional certification, KS, NET, NEP, collective standard certification

* Professor, Dept. of Liberal Arts,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jynam@kpu.ac.kr)

** Professor, Dept. of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jhlee@kpu.ac.kr)